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 7. 7(목)

교육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0. 9. 1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0. 9. 3

라. 상정일자

- 2010.12.17(제189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 보류

- 2011.06.23(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 의결

○ 제안설명 :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신 동 찬

○ 검토보고 : 교육전문위원 장 원 희

○ 질의 및 토론

○ 수정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심야 교습에 따른 늦은 귀가로 침해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과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는 서민가계 안정화

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심야교습시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변경(안 제4조의2)

- 중·고등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05:00부터 24:00에서 05:00부터 22:00로,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에서 05:00부터 20:00로 변경함

### ○ 일부 조항의 사용 중인 용어 정비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에 근거하여 학생들의 건강권·수면권과 학생들을 심야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구)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에 제출되어 심사 보류된바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우리위원회로 승계되었음

- 본 개정안은 2009년 6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과 “학원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의 결과와 UN 사회권규약 위원회의 사설 야간학교 및 학원의 운영 억제 등의 견해를 반영하여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을 현행보다 2시간 단축하여 개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2010년 3월 22일 (구)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제214회 임시회 심의 결과 학원교습시간 제한은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하고 고등학생의 경우 야간 자율학습이 선택에 의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좀더 시간을 갖고 상호 심사숙고한 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처리를 보류한 바 있음

-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고등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현행 05:00부터 24:00에서 05:00부터 22:00로하고,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현행 05:00부터 22:00에서 05:00부터 20:00로 각각 2시간을 앞당겨 변경하며,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금번 조례개정안은 청소년의 건강권·수면권 등 기본적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고, 청소년을 심야시간 유해환경 및 범죄로부터 보호하며, 학원 교습시간 단축이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서민가계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며,  
전국 시도별 상황을 보면 서울, 경기, 광주, 대구는 오후 10시까지로 교습시간을 단축·변경하여 서울은 시행하고 있고 다른 시도는 2011년부터 시행할 예정에 있으며, 이외 다른 시도는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보류되거나 논의 단계에 있음
- 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심야교습시간 제한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침해 요인을 완화하는 등의 긍정적 측면이 충분히 있으나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바, 교습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하여서는 (구)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심사 시 보류결정의 주된 사유가 되었던 야간자율학습 실시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율성 보장 및 운영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대책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타 시도 조례 개정 추진 현황

(기준:2010.12.17)

연번	시도명	진행상황		교습시간(오후)			비고
		상황	시행일자	초 【개정】	중 【개정】	고 【개정】	
1	서울	개정	'08.06.01	【10】	【10】	【10】	시행중
2	부산	심의검토		10	10	11	
3	대구	개정	'11.03.01	12 【10】	12 【10】	12 【10】	자율학습 자율실시 방안 수립 중
4	인천	의회계류		10	12	12	
5	광주	개정	'11.03.01	12 【10】	12 【10】	12 【10】	자율학습 지도방안 수립
6	대전	상정협의		10	11	12	
7	울산	상정협의		12	12	12	
8	경기	개정	'11.03.01	10 【10】	11 【10】	12 【10】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율학습 강제 금지)
9	강원	심의보류		12	12	12	공교육 부실 지적
10	충북	상정협의		11	11	12	
11	충남	상정협의		11	12	12	
12	전북	상정협의		12	12	12	
13	전남	심의보류		12	12	12	강제 자율학습 지적
14	경북	심의예정		11	11	12	'10.12.21 예정
15	경남	심의보류		12	12	12	강제 자율학습 지적
16	제주	법제심의		12	12	12	

※ 개정완료(4곳) : 서울, 대구, 광주, 경기

심의보류(2곳) : 강원, 경남 / 심의예정(1곳) : 경북

기 타(9곳) : 부산, 인천,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 의>

#### ○ 김기홍 위원

- 최근 언론발표에 의하면 학생의 80%이상이 야간자율학습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대답한 결과에 대하여 의견은?

#### ○ 강병수 위원

-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본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판단인데 시기를 늦추어 시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 교육청 학력향상대책에 의하면 학생들의 성적이 저조한 경우 교장들에게 전보조치 등 인사에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보는데 견해는?

### <답 변>

#### ○ 교육정책국장 이팽윤

- 야간자율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자율의사에 따라 시행토록 지도하고 있음
-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학생의 성적은 학습시간과 비례하지 않으며, 주입식 교육이 아닌 자기주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봄. 강제적인 자율학습은 방지하고 공부장소가 필요한 학생 등 교육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율학습을 권장하겠음

## 5. 토론요지

가. 찬성 : 없음

나. 반대 : 권용오, 김원희, 강병수, 김기홍, 김영태, 노현경, 배상만  
이수영, 허회숙 위원

## 6. 수정안 요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 시간은 20:00까지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u>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u>2012.1.1</u>부터 시행한다.</p>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9명)
  - 가. 찬성 : 김원희, 김영태, 배상만, 이수영, 허희숙 위원
  - 나. 반대 : 노현경, 김기홍 위원
  - 다. 기권 : 권용오, 강병수 위원

##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  
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  
다.

- 부칙,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 및 <u>같은 법 시행령</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5. (생략) 6.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 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 5. (생략) 6. 체육시설·오락시설 <u>기</u> 7. (생략)	제2조(학원시설) ① ----- ----- ----- -- <u>각 호</u> ----- -----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u> 」(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 2.~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 ② ----- ----- <u>각</u> <u>호의</u> ----- 1. ~ 5. (현행과 같음) 6. ----- <u>그</u> <u>밖의</u> 편의시설 7. (현행과 같음)	제2조(학원시설) (개정안과 같음)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u>법 제8조제1항에</u>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u>각호와</u> 같다.</p> <p>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u>30제곱미터이상</u>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 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u>85제곱미터</u>) 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u>1인</u>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2. 열람실 : 열람실은 <u>60제곱미터이상</u>으로 하되, 1제곱미터 당 수용인원이 <u>0.8인</u> 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하여야 한다.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3. (생략)</p> <p>4. 급수시설 및 화장실 :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u>별표5와</u> 같다.</p> <p>5. (생략)</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p>	<p>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u>각호와</u> 같다.</p> <p>1. ----- <u>30제곱미터 이상</u> ----- --(----- ----- <u>85제곱미터 이하</u>)----- ----- <u>1명</u>----- ----- -----</p> <p>2. ----- <u>60제곱미터 이상</u>----- ----- <u>0.8명</u> ----- ----- ----- ----- ----- -----</p> <p>3. (현행과 같음)</p> <p>4. ----- ----- ----- ----- ----- -----</p> <p><u>별표 5와</u> -----</p> <p>5. (현행과 같음)</p> <p>6.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p>	<p>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방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소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에 따른-----          -- <u>소방 관계 법령</u>에서 -----          -----</p>	
<p>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 기준)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1과 같다.          ② ~ ③ (생략)          ④ 지하실은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한 방향이 지면 위로 완전 노출되고 제2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 기준)① 법 제8조에 따른-----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제2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          -----</p>	<p>제2조의3(교습과정별 시설 기준) (개정안과 같음)</p>
<p>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① (생략)          ② 영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숙박시설의 위치, 환경기준, 시설·설비 기준, 영양사 및 생활지도 담당인력의 배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2. (생략)          3. 숙박시설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4. 숙박시설에는 「소방 관계법령」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숙박시설의 화장실 및 급수시설은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며, 화장실은 남·여별로 구분되어야 하고, 급수시설</p>	<p>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① (현행)          ② -----          -----          -----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3. <u>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시설·설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u>          4. 숙박시설에는 <u>소방 관계 법령</u>이 정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          -----          -----</p>	<p>제2조의4(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등록 기준) (개정안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p> <p>6. 숙박시설의 급식시설이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한다.</p> <p>7. 숙박시설에는 생활지도 담당인력을 1인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남·여 수강생이 있을 경우 각각 1인 이상으로 한다.</p>	<p>----- -----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 -----</p> <p>6. ----- 「식품위생법」 제88조에 해당되는----- ----- -----</p> <p>7. ----- ----- 1명 ----- ----- ----- 1명 이상 -----</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교육감은 제2조의4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 내의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 ----- ----- 이 경 우 관할 지역의 ----- ----- -----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5(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제한) (개정안과 같음)</p>
<p>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보험가입 또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체벌을</p>	<p>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① ----- ----- ----- 다음 각 호의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그 밖의 ----- -----</p>	<p>제3조(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⑤ (생략)</p>	<p>-----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 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p> <p>(이하 생략)</p>	<p>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 능력인원)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p> <p>----- (이하 현행과 같음)</p>	<p>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 능력인원) (개정안과 같음)</p>
<p>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2:00까지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p> <p>-----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p> <p>20:00까지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p> <p>-----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행정처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제5조(행정처분) 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5조(행정처분)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별표 6]</p> <p><u>환기·채광·조명·온습도의 조절기준</u> (제2조의2 제5호 관련)</p> <p>1. 환기</p> <p>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다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p> <p>2. 채광(자연조명)</p> <p>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조도(인공조명)</p> <p>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별표 6]</p> <p><u>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u> (제2조의2 제5호 관련)</p> <p>1. 채광(자연조명)</p> <p>가. 최대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10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강의실 바깥의 반사체로부터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2. 조명(인공조명)</p> <p>가. 강의실의 조명도는 책상면을 기준으로 300룩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3. 환기</p> <p>가. 환기의 조절기준 환기용 창 등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충분한 환기량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p> <p>나. 학원 안으로 들어오는 공기의 분포를 균등하게 하여 실내공기의 순환이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별표 6]</p> <p><u>채광·조명·환기·온습도의 조절기준</u> (제2조의2 제5호 관련)</p> <p>1. 채광(자연조명) (개정안과 같음)</p> <p>2. 조명(인공조명) (개정안과 같음)</p> <p>3. 환기 (개정안과 같음)</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나. 최대 조도와 최소조도의 비율이 3대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p> <p>다. 인공조명에 의한 눈부심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p> <p>4. 실내온도 및 습도</p> <p>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다. 중앙관리방식의 환기설비를 설치할 경우 환기덕트는 공기를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p> <p>4. 실내온도 및 습도</p> <p>가. 실내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되, 난방온도는 섭씨 18도 이상 20도 이하, 냉방온도는 섭씨 26도 이상 28도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나. 비교습도는 3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p>	<p>4. 실내온도 및 습도 (개정안과 같음)</p>

#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영"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2항제6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와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의2 중 "법"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하며, "각호"를 "각 호"로 한다.

같은 조 제1호 중 "30제곱미터이상"을 "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85제곱미터"를 "85제곱미터 이하"로 하며, "1인"을 "1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2호 중 "60제곱미터이상"을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0.8인"을 "0.8명"으로 한다.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5"를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 규정에 의한"을 "에 따른"으로 하며, "「소방 관계법령」"을 "소방 관계 법령"으로 한다.

제2조의3제1항 중 "제8조제1항"을 "제8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조의2제4호 내지 제6호에 의한"을 "제2조의2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로 한다.

제2조의4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숙박시설"을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방 관계 법령」"을 "소방 관계 법령"으로 한다.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먹는물 관리법」의 규정에 의한"을 "「먹는물 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69조의 규정"을 "제88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1인"을 각각 "1명"으로 한다.

제2조의5제1항 중 "교육감"을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로 하고, "관할지역"을 "관할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조 중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 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제5조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을 "17조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기타"를 "그 밖에"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제1항 개정규정은 2012.1.1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및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 및 <u>같은 법 시행령</u>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학원시설)</b> ① 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u>필요한</u>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영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 할 수 있다.</p> <p>2.~ 5. (생략)</p> <p>6. <u>기타</u>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p> <p>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u>필요한</u> 다음 <u>각호</u>의 시설을 둘 수 있다.</p> <p>1. ~ 5. (생략)</p> <p>6. 체육시설·오락시설 <u>기타</u> 편의시설</p> <p>7. (생략)</p>	<p><b>제2조(학원시설)</b> ① ----- ----- ----- <u>각 호</u> ----- -----</p> <p>1. 강의실 또는 열람실(「<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 별표 1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 또는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 -----</p> <p>2. ~ 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 -----</p> <p>② ----- ----- <u>각 호</u>의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그 밖</u>의 편의시설</p> <p>7. (현행과 같음)</p>
<p><b>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b> <u>법</u> 제8조 제1항에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u>각호</u>와 같다.</p> <p>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u>30제곱미터 이상 135제곱미터</u>(보통교과계열의 교습</p>	<p><b>제2조의2(단위시설의 기준)</b> 「<u>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u>」(이하 “법”이라 한다) <u>제8조에</u> 따른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u>각 호</u>와 같다.</p> <p>1. -----<u>30제곱미터 이상</u>----- -----</p>





현 행	개 정 안
<p>다음 <u>각호</u>의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④ 제3항에 따라 학원 등에서 교습 또는 기타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에게 차별을 가하거나, 신체·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제 때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교습시간을 적정하게 안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p> <p>⑤ (생략)</p>	<p>다음 <u>각 호</u>의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u>그 밖</u>의 ----- ----- ----- ----- -----</p> <p>⑤ (현행과 같음)</p>
<p><b>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b> 영 제10조제3항의 <u>규정에 의한</u> 실험·실습 또는 실기를 필요로 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은 ----- (이하 생략)</p>	<p><b>제4조(교습과정별 일시수용능력인원)</b> 영 제10조제3항에 <u>따른</u> ----- ----- ----- ----- (이하 현행과 같음)</p>
<p><b>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b>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학교 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다만, 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22:00까지 한다.</p> <p>② (생략)</p>	<p><b>제4조의2(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b> ① ----- ----- <u>초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1:00까지, 중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 고등학교 교과를 교습하는 학원 등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3:00까지로 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b>제5조(행정처분)</b> 법 제17조의 <u>규정에 의한</u> 행정처분은 다음 <u>각호</u>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u>인천광역시교육감</u>(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p> <p>1. ~ 3. (생략)</p>	<p><b>제5조(행정처분)</b> 법 제17조에 <u>따른</u> 행정처분은 다음 <u>각 호</u>와 같으며, 행정처분의 대상, 기준, 절차, <u>그 밖에</u> 필요한 사항은 <u>교육감</u>이 따로 정한다.</p> <p>1. ~ 3. (현행과 같음)</p>

